17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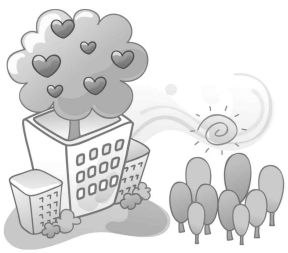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사업	생명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기업	기타	기타	0~5	55	20	2월 4월	1578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이공계 전분야	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24	2,448	210	1월 2월 6월	1585
중소 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이공계 전분야	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14	645	175	2월 5월 6월 8월	1593
중소 기업청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생명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36	521	208	3월 5월 7월 9월	1599
중소 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전체	대학, 연구소, 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0~12	1,389	80	'12. 12월	1605
중소 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전체	중소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12	184	12	1월	1611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전체	기업(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6~12	1,314	170	1월 3월	1616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사업	전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최대 24개월	831	250	2월 6월 10월	1623
중소 기업청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제품개선, 공정개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발연구	9~12	400	50	'12. 12월	1629
중소 기업청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전체	중소기업	인력양성	기타	12~24	50	1,265	3월	1634
중소 기업청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사업	전체	중소기업	인력양성	기타	0~9	20	-	3월	1639
소계	11개 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정선욱 사무관

(전화 : 042-481-4404, E-mail : swjeong@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5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

○ 조합,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제발굴연구회를 선정·운영하여 업종공통 애로기술 및 중소기업의 미래유망형 R&D 과제를 발굴

○ 중소기업의 미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R&D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의 R&D역량을 사전 진단하여 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지원

□ 사업 목표

○ 사업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분야에 중소기업의 R&D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기획역량 강화 도모

○ 미래 유망기술과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제기획을 지원해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 R&D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R&D기획 능력을 강화

□ 지원 방향

○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지원 확대를 통해 R&D 및 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 R&D기획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에 관한 방법론과 절차를 사전에 교육시켜, 적극적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기술로드맵 실무능력 배양

○ 과제발굴연구회를 통해 기술개발 관련 중간조직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 유망 16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

○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제조기반기술 부문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R&D기획 지원사업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3%이상 기업 · 창업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소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R&D기획지원사업 : 35억원
- 과제발굴연구회 : 10억원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 : 10억원

○ 지원방식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등에서 자유응모하며 서면, 대면 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대해 최종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5개월 지원

□ 지원조건

○ R&D기획지원사업 : 총 사업비의 65%~7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25% 부담

○ 과제발굴연구회 : 연구회당 1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 : 총 사업비의 7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기 관 명	주요 기능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 전문 및 평가위원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지원대상과제 선정(대면, 중간, 최종 평가)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 수행
기획기관 (기보, KISTI, 프렌즈, 더비앤아이)	○ R&D기획지원 수행 ○ 기획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중소기업
⬇	
○ 주관기관 자격과 신청 자격 검토 및 확인 결과 통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과제 확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기획기관협약(전문기관 및 기획기관) ○ 기획지원협약(기획기관 및 주관기관) ○ 사업비지급(전문기관→기획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획기관
⬇	
○ R&D기획 교육과정 이수 ○ 기획사업 수행	중소기업
⬇	
○ 기획사업 진도보고서 제출 ○ 진도점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획기관
⬇	
○ 기획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 정부출연금 잔액 및 정부출연 회수금 납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획기관
⬇	
○ 분야별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 기획사업 결과 검증 및 연계지원 추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연계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 기술개발에 대한 연계지원 및 사업수행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최종평가
R&D기획지원사업	2.5	2.18~3.8	3~4월	5~6월	11월중
	4.25	4.29~5.24	6~7월	8월중	12월중
과제발굴연구회사업	4.25	4.29~5.24	6~7월	8월중	12월중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4.25	4.29~5.24	6~7월	8월중	12월중

7. 제출서류

□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등

□ 협약시 제출서류

○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

○ 신용상태,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별 관리지침

□ 기타자료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www.smtech.go.kr/공지사항)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통합 공고(www.smtech.go.kr/ 공지사항)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정선욱 사무관
(Tel : 042-481-4404)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김종윤 책임
(Tel : 042-388-022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정선욱 사무관

(전화 : 042-481-4404, E-mail : swjeong@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이공계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44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0백만원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2,448억원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산업기술 전 분야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업
	56199	그 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96922	서비스업
	96991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2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글로·략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335억원)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지원

- 투자연계과제(241억원) : 국산화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 기술개발

○ 혁신기업기술개발(1,620억원) : 중소기업 통합 기술로드맵 기반의 녹색성장, 제조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품목 기술개발지원

○ 기업서비스연구개발(155억원)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table>
<tr><th colspan="2">사업명</th><th>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h><th>출연금
비중</th><th>지원
방식</th><th>지원대상</th></tr>
<tr><td colspan="2" rowspan="2">글로벌전략
기술개발</td><td rowspan="2">최대 2년,
10억원</td><td rowspan="2">60%
이내</td><td rowspan="2">지정</td><td>– 글로벌 : 수출액 3백만불 & R&D 집적도 3% 이상 또는 글로벌강소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은 신청 제외</td></tr>
<tr><td>– 투자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 R&D집적도 3% 이상 & 투자유치
* 단, 창업 1년 미만,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개인기업은 신청 제외</td></tr>
<tr><td colspan="2">혁신기업기술개발</td><td>최대 2년,
5억원</td><td>75%
이내</td><td>자유
(1·2차 공고)</td><td>–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 R&D집적도 3% 이상
* 단, 창업 1년 미만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 신청 제외</td></tr>
<tr><td rowspan="2">기업서비스
연구개발</td><td>제품</td><td>최대 1년,
2억원</td><td rowspan="2">75%
이내</td><td rowspan="2">자유</td><td rowspan="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업종 중 경주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등 영위 중소기업은 신청제외</td></tr>
<tr><td>지식</td><td>최대 1년,
1.5억원</td></tr>
</tabl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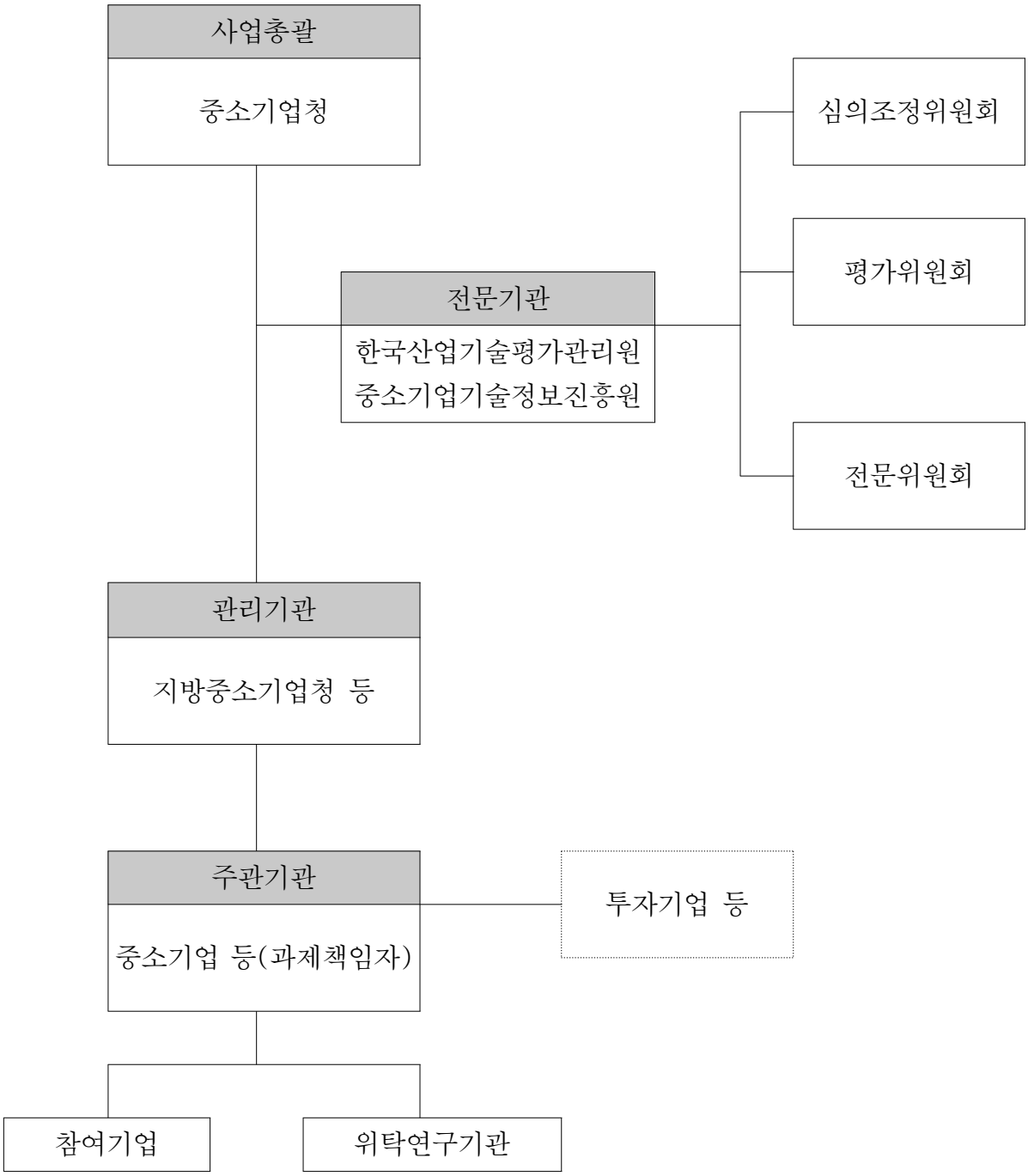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과제수요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검증	관리기관, 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업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평가	관리기관
신규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업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기술개발활용	주관기업

6.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2월	2~3월	4~5월	5~6월
투자연계과제		2월	2~3월	4~5월	5~6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차	1월	1~2월	3~4월	5~6월
	2차	6월	6~7월	8~9월	10~11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2월	2~3월	4~6월	7월

7. 제출서류

□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등

□ 협약시 제출서류

○ 수정사업계획서,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 계약서(해당시)

○ 신용상태,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기타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 매뉴얼 등((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자료마당)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정선욱 사무관
(Tel : 042-481-4404)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Tel : 042-715-2325, 30, 3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곽용화 연구관

(전화 : 042-481-4447, E-mail : yhkwak@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이공계 전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64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5백만원

1. 사업개요

□ 목적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산업기술 전 분야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45억원

○ 수요조사과제 :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패키지형 과제

○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요처연계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제품 개발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5억원	55~75%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2.5억원 (해외는 1.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해외수요처연계과제	최대 2년, 5억원 (글로벌협력과제)	50% 이내	지정공모
	최대 1년, 1.5억원 (기업제안과제)	50% 이내	자유응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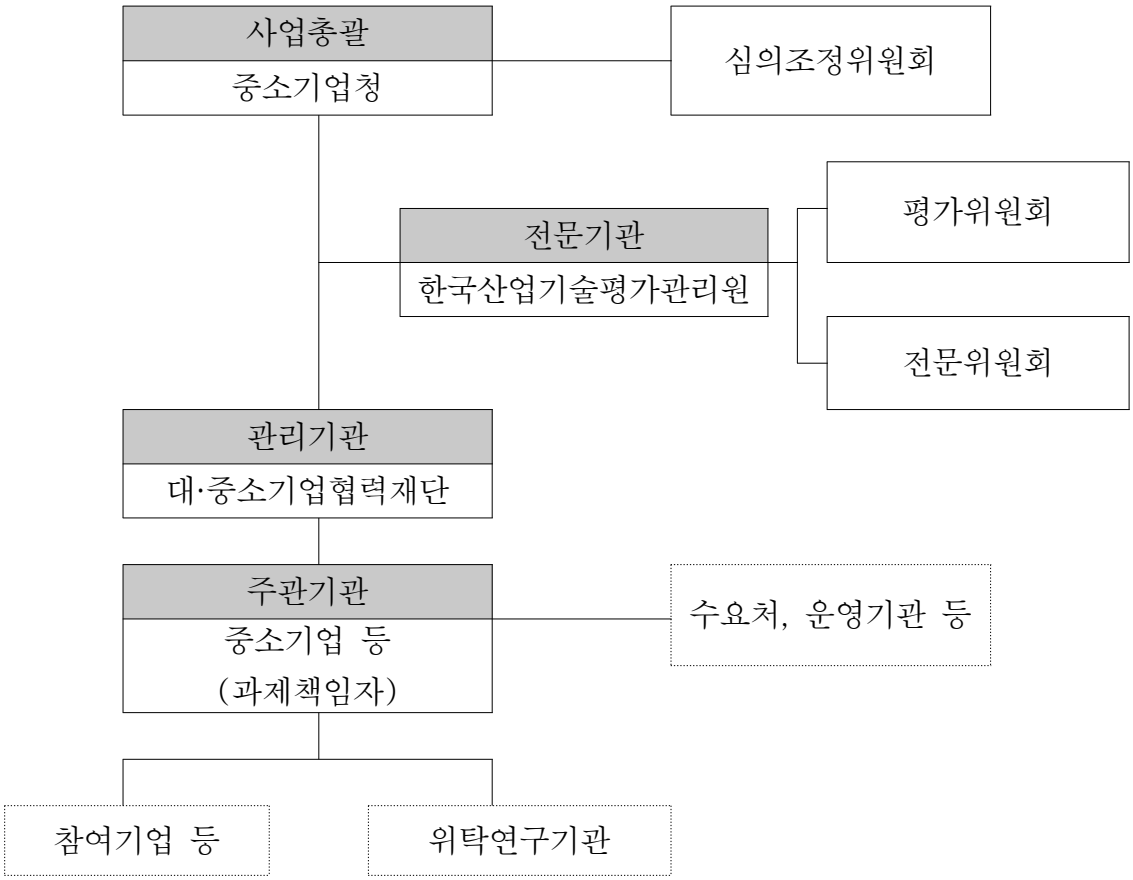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과제수요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검증	관리기관, 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업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평가	관리기관
신규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업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기술개발활용 및 구매현황 보고	주관기업 / 수요처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추진일정

□ 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구 분	사업(과제)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월	3월	4월	4~ 5월
2차	5월	6월	7월	7~ 8월
3차	8월	9월	10월	10월

□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구 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협력과제	1차	2월	3월	4~5월	5~6월
	2차	6월	8월	10월	11월
기업제안과제	1차	2월	3월	4~5월	5~6월
	2차	5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7. 제출서류

□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등

□ 협약시 제출서류

○ 수정사업계획서

○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

○ 위탁연구개발 계약서(해당시)

○ 신용상태, 정보제공, 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내지 14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기타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 매뉴얼 등(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자료마당)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Tel : 042-481-4447)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Tel : 02-368-8744, 47)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Tel : 042-715-2326, 3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곽용화

(전화 : 042-482-4447, E-mail : yhkwak@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생명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2) 연구수행주체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2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08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 투자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 선정 및 개발비 지원

□ 사업 목표

○ R&D를 매개로 투자기업(Funder)과 개발 중소기업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 관계를 조성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성과를 구매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의 기업생태계 조성

○ 투자기업 “수요”에 중소기업 “공급”의 원활한 협력과 매칭으로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 지원 방향

○ 투자기업의 “수요”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 새로운 시장친화 투자형 R&D과제 지원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신청한 과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지정공모	250억원
미래전략과제				(컨소시엄[2])	50억원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145억원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미래전략 1개 과제당 2개 이상~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정부출연금 37.5%, 투자기업 부담금 37.5%) 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과제 신청·접수, 지원대상과제 선정(대면, 중간, 최종평가)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전문기관)
⬇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과제 신청	주관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건강관리위원회)
⬇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	
최종점검	관리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구 분		투자기업 과제제안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수요조사과제	~2.20	3.18	3.18~4.16	5월중	5월~6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2차	수요조사과제	~4.19	5.9	5.9~6.7	6월중	7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3차	수요조사과제	~6.20	7월초	~8월초	8월중	9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4차	수요조사과제	~8.20	9월초	~10월초	10월중	11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7. 제출서류

연번	서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공 통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공 통
⑤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공 통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⑩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	공 통
⑪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공 통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 창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기타서류

○ 2013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www.smtech.go.kr)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곽용화 연구관
(Tel : 042-482-4447, E-mail : yhkwak@smba.go.kr)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김종윤 책임
(Tel : 042-388-0220, E-mail : yavis7@tipa.or.kr)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윤세명

(전화 : 042-481-4458, E-mail : 3myoon@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개월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8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사업 :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같은 지역 내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산학연 도약기술개발사업 : 혁신역량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3. 신청자격

□ 참여자격

○ 신청기업 :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법인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389억원

-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 도약기술개발(99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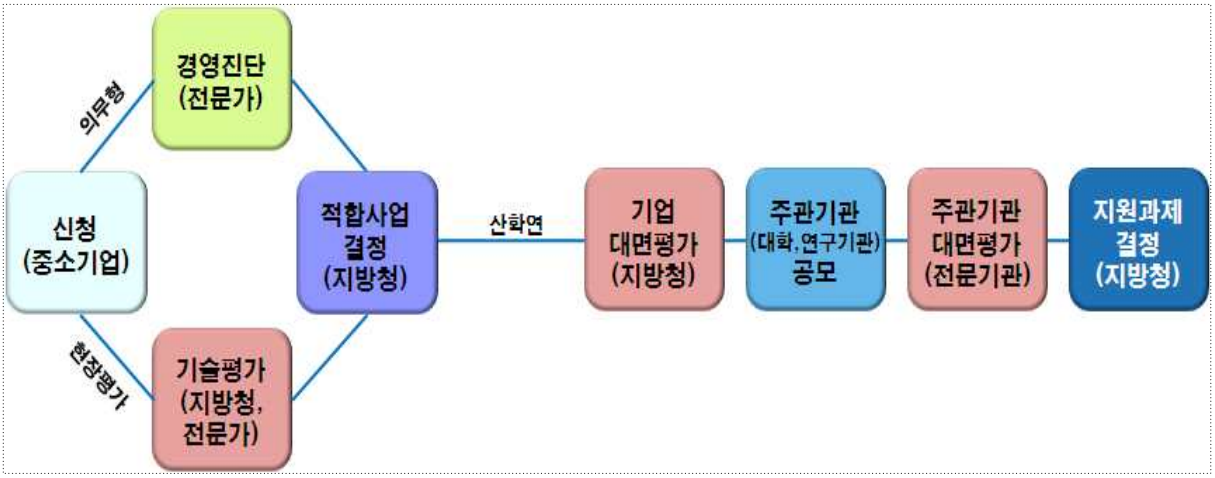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및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기업→관리기관
기술평가 /건강진단	● 경영진단 및 기술평가 ● 적합사업 결정 및 추천(건강관리위원회)	관리기관
참여기업 대면평가	●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통한 대면평가 ● 기업 선정	관리기관
과제등록	● 종합관리시스템에 관리기관 선정기업 과제 등록	기업→종합관리시스템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주관기관→종합관리 시스템
주관기관 대면평가	● 주관기관(과제책임자)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선정	● 건강관리위원회	관리기관
협약체결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다자간 전자협약	당사자
사업수행·관리	● 사업내용, 연구원 변경 등 협약 변경 적절성 관리	관리기관/전문기관
완료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관리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 완료과제 최종평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12.12월	매월 1~10일 (1월부터 9월까지)	연중	연중

* 예산 소진 시 신청시기가 단축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신청 : 건강진단신청서,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신청기업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는 현장평가 시 증빙

○ 주관기관 사업신청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표준협약서, 사업비지급요청서, 사업비 지급계좌사본, 기업부담금 납부내역확인(가상계좌)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진도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 내역 포함), 최종보고서, 사업비정산

8. 관련자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내지 11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기타 안내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기술/R&D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윤세명 사무관
(Tel : 042-481-4458, E-mail : 3myoon@smba.go.kr)
○ 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개발지원팀　남덕원 대리
(Tel : 042-720-3351, E-mail : endymay@sanhak.net)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장준수

(전화 : 042-481-4443, E-mail : tree@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개월~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4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대상분야

□ 주관기관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 참여기업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도입금액 기준 1천만원 이상(세트장비 포함)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비영리 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게 R&D 수행시 필요한 장비 이용료를 중소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구 분	바우처 최대한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100% (최대 71,428천원)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100% (최대 83,333천원)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구매하여 장비 이용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주관기관)	:	○ 주관기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사전검토	:	○ 주관기관 자격 검토 및 신규 참여 확인	관리기관
평가 및 선정	:	○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주관기관 추천	관리기관
최종확정	: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	전문기관
협약체결	:	○ 표준협약서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3자협약
참여기업 선정		○ 신청서와 장비활용계획서 제출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참여기업 관리기관
사업수행	:	○ 참여기업 : 바우처 구매 및 장비예약 ○ 주관기관 : 참여기업 장비이용 지원 ○ 전문기관 : 주관기관에 장비이용료 지급	참여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진도보고	:	○ 진도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태조사	관리기관 주관기관
최종보고	:	○ 사업완료 보고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관리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사업공고	´13. 1. 24
주관기관 신청·접수	(상반기) ´13. 1. 25 ~ 2. 08 (하반기) ´13. 7. 15 ~ 7. 29
참여기업 신청 · 접수	´13. 2. 25 ~ 연중상시
참여기업 사업 신청 및 수행	´13. 3월부터 상시

7. 제출서류

□ 주관기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 참여기업 : 참여기업신청서, 장비활용계획서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3호)

○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지원정책>기술/R&D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장준수 사무관
(Tel : 042-481-4443, E-mail : tree@smba.go.kr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이현주 사원
(Tel : 042-720-3341, E-mail : yona@sanhak.net)
(사)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윤혜성 사원
(Tel : 042-720-3342, E-mail : comet0652@sanhak.net)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서종필 사무관

(전화 : 042-481-4442, E-mail : jpseo@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기업(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6~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314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7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5년 이하) 및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창업과제) 건강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1인창조기업과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개발

○ 창업기업 또는 1인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1인창조과제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 투자연계멘토링과제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과제명	지원금액	과제유형	개발기간
창업과제	최대 2억원	자유응모형	최대 1년
1인창조기업과제	최대 1억원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최대 2억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하며 이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창업과제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R&D 과제 신청	주관기관 → 관리기관
건강진단(경영진단/기술평가)	진단기관/관리기관
R&D과제 세부기획	전문기관(과제기획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 ↔ 전문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창업기업,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인 창조기업과제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과제 신청·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현장조사	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	
사업수행·관리	주관기관
⬇	
진도점검	관리기관
⬇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1인 창조기업,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투자연계멘토링과제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운영기관
기술개발과제 및 멘토 계획 신청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	주관기관(창업기업) 투자자 ↔ 운영기관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대면평가(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지원과제 확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적격투자 이행확인 및 멘토링 협약	운영기관 ↔ 투자자 ↔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후관리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최종검토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 벤처캐피탈협회

6.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창업과제	1월	1월~7월	3월~9월	3월~10월
1인 창조기업 과제	3월	3월~4월	4월~5월	6월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3월	4월	6월	8월

7.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연번	서식 명	필수여부	비 고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수	공통
②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③	멘토링 계획서	필수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필수	공통
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공통
⑥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필수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만 해당
⑦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공통
⑧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공통
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http://minwon.nps.or.kr 에서 출력	필수	1인창조기업 과제만 해당
⑩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공통
⑪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공통
⑫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공통
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공통

□ 우편제출 :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만 해당

연번	서식 명	필수여부	비 고(제출 여부)
⑭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해당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⑮	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해당시	엔젤클럽
⑯	투자확인서(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	해당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⑰	이력서(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	필수	공통
⑱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개인투자자용)	해당시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멘토
⑲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VC용)	해당시	벤처캐피탈 소속 멘토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9조, 제10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 창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서종필 사무관
(Tel : 042-481-444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책임
(Tel : 042-388-0211)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박만용 사무관

(전화 : 042-481-4452)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최대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31억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5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 사업목표

○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 전문사업으로 특화

○ 개방형 R&D 환경조성을 통한 산업(기술)간 open innovation 구현

□ 사업내용

○ (산연협력)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복합 기술과제 지원

○ (센터연계형)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우수기획과제 연계지원

○ (이전기술)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우수 융·복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세부내용	사례
기술개선형	2개 이상의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 기술 분야에 적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유형	공기방울세탁기 로봇청소기 초음파기기
신기술창출형	2개 이상의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창출하는 유형	임플란트 소재 전자종이 iPod 및 iPhone
시장가치제고	2개 이상의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 시장을 확장하는 유형	App Store
신시장창출형	2개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유형	Nintendo Wii 연료감응 태양전지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산연협력)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센터연계형)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간(산-산) 또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간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농어업법인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이전기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산연협력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지정공모
이전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센터연계형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자유응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 지방청(관리기관) :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선정평가, 최종평가, 사후관리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사업신청, 사업수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 주관기관
⬇	
자격검토 및 선정평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3자협약)	• 전문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진도점검	• 관리기관
⬇	
최종점검 및 사업비정산	• 관리기관
⬇	
최종평가	•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성과분석 등)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협약
산연협력기술개발	2월	3~4월	4~6월	6월
이전기술개발	6월	6~7월	8~10월	11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월	3~4월	4~6월	6월
	10월	10월	10~12월	12월

7.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비 고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필수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필수
③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⑥	신청과제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필수
⑦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보증연계 선택시
⑧	기술이전계획서	이전기술과제 신청시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박만용 사무관
(Tel : 042-481-445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이영규 책임
(Tel : 042-388-0223, E-mail : yklee@tipa.or.kr)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장준수 사무관

(전화 : 042-481-4443)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제품개선·공정개선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3)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9개월 ~ 1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50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

□ 사업목표

○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 과제로 특화

○ 50인 미만 뿌리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제품·공정개선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제품개선) 중소기업이 제조·납품하는 기존제품의 성능향상, 고급화, 다양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공정개선) 중소기업의 공정기술개발(물류·유통 포함)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업체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0억원(신규 290억원, 계속 110억원)

○ 선정방식 :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 사업내용 : 뿌리산업,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정부출연금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추진계획 수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관리 수행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청접수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지방중기청 건강관리팀을 통한 방문접수

□ 소요기간 및 추진일정

<table>
<tr><td rowspan="4">1차</td><td colspan="2">1월</td><td>2월</td><td>3월</td></tr>
<tr><td colspan="2">신청접수(1/1~10)</td><td></td><td>건강관리위원회(~3/10)</td></tr>
<tr><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경영진단 및 기술평가(1/11~1/31)
적합사업 결정(2/10)</td><td rowspan="2">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3/30)</td></tr>
<tr><td colspan="2">대면평가(~2/28)</td></tr>
<tr><td>2~8차</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4">9차</td><td colspan="2">9월</td><td>10월</td><td>11월</td></tr>
<tr><td colspan="2">신청접수(9/1~10)</td><td></td><td>건강관리위원회(~11/10)</td></tr>
<tr><td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경영진단 및
기술평가(9/11~9/30)
적합사업 결정(10/10)</td><td rowspan="2">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1/30)</td></tr>
<tr><td colspan="2">대면평가(~10/31)</td></tr>
</table>

7. 제출서류

□ 과제별

○ 과제신청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협약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연구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2013년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기타서류

○ 2013년 제품공정개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홈페이지, smba.go.kr)

○ 2013년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go.kr)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장준수 사무관
(Tel : 042-481-4443, E-mail : tree@smba.go.kr)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황윤태 책임
(Tel : 042-388-0213, E-mail : hyt2040@tipa.or.kr)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생산기술정책과	이관식 연구관

(전화 : 042-481-4406, E-mail : ksman@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265백만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을 완화

□ 사업목표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해당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용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

□ 추진방향

○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 기술개발인력으로 활용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 산업기술분야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

□ 신청자격

○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각 차수별 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억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주관기관) → 서면평가 → 심의조정(지원과제 선정) → 지원(12개월 후 진도점검 실시)

□ 지원조건

○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지원

○ 1인당 인건비 최대 920만원, 능력개발비용 345만원

– 인건비 : 기준연봉의 40%, 능력개발비용 : 기준연봉의 15%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지원, 시행계획 공고 등 사업총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문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사후관리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과제접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등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추진절차	수행내용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공고	○ 사업계획 공고	3월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정·접수 (온라인접수(smtech))	1차 : 3~5월 2차 : 7~9월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적절성 등을 검토	1차 : 6월 2차 : 10월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지원대상 과제 확정	1차 : 7월 2차 : 11월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차 : 7월 2차 : 11월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지원과제 완료 후

7. 제출서류

□ 과제별

○ 사업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협약체결 관련 서류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진도점검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비 집행결과내역 포함)

□ 기관별 : 과제별 제출에 대한 기관 확인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 및 21조)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생신혁신정책과　이관식 연구관
(Tel : 042-481-4406)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양근희 책임
(Tel : 042-388-0216, E-mail : khyang@tipa.or.kr)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중소기업청	생산기술정책과	이관식 연구관

(전화 : 042-481-4406, E-mail : ksman@smba.g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전체
(2) 연구수행주체	중소기업
(3) 지원목적	인력양성
(4) 연구개발단계	기타
(5) 연구개발기간	0개월~9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사업목표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를 위해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 추진방향

○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단계 교육지원(4~10주 소요), 우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2. 지원대상분야

□ 인력양성

○ 산업기술분야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억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교육참여 신청서(개인) → 서면평가 → 교육지원 → 프로젝트참여 → 취업연계

□ 지원조건

○ 3단계 교육지원(4~10주 소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 (1단계)소양교육 → (2단계)전문 직무교육 → (3단계)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체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지원, 시행계획 공고 등 사업총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행기관관리, 사업비정산, 사후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취업연계 R&D교육센터 운영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추진절차	수행내용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공고	O 사업계획 공고	3월
교육참여 신청·접수	O 교육참여신청서 신정·접수 (온라인접수(rndacademy))	4월
서면평가	O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력서 등을 검토	5월
교육지원	O 지원대상 인력 확정 및 교육지원	5~11월
취업연계	O 교육수료생 취업연계	5~11월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O 최종보고서 제출 O 교육센터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7. 제출서류

□ 개인별

○ 교육참여 신청서(이력서 등 포함)

□ 수행기관 : 개인별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및 교육센터 관련서류(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결과) 등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 및 21조)

<문 의 처>

○ 정　　부 : 중소기업청 생신혁신정책과　이관식 연구관
(Tel : 042-481-4406)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양근희 책임
(Tel : 042-388-0216, E-mail : khyang@tipa.or.kr)